|  |  |  |
| --- | --- | --- |
|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 관광업무**  **시범 감독관리 임시방법**  국가관광국, 상무부 령 제33호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 관관업무 시범 감독관리 임시방법》이 국가관광국, 상무부의 심의에 통과되었기에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관광국 국장 邵琪衛  상무부 부장 陳德銘  2010년 8월 29일  **제1조** 관광업의 대외개방을 진일보 다그치고 국제관광업무의 합작을 강화하고 국제 선진적인 여행사 경영모델을 도입하고 중국의 여행사업의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사 조례》와 국무원의 《관광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시범을 실시하는 토대에서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경내 거주민의 출경(出境)관광 업무를 점차적으로 개방한다.  **제3조**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 관광업무 시범은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관광 업무라 함은 시범자격을 취득한 중외합자경영여행사가 중국 내륙 거주민을 모집, 조직, 접대하여 출국관광과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관광을 시키는 경영활동을 가리키며, 대륙거주민의 대만지역 관광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가는 출경관광 업무를 시범하는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수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구체적인 수량은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가 결정한다.  **제6조** 중외합자경영여행사가 출경관광 업무를 시범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행사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여행사 조례》 제8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는 신청인 중에서 출경관광 업무를 시범 경영하는 중외합자경영여행사를 선택하여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외국인투자여행사 관광업무 경영허가증 심사의견서》를 발급한다.  **제8조** 신청인은 《외국인투자여행사 관광업무 경영허가증 심사의견서》와 투자자 각방이 체결한 계약서, 정관을 지참하고 상무주무부서에 경영범위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상무주무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에서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을 교체 수령하도록 통지하며,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교체 발급받은《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과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기업경영법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9조** 출경관광 업무 시범자격을 취득한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이하 시범여행사라 함)는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을 교체 발급받은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품질보증금 120만 위안을 추가 공탁해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시범여행사는 출국관광 업무를 경영한 후의 3년 내에 매 반년마다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에 아래의 경영상황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출경 관광객을 조직, 접대한 관광팀 수량과 인수  (2) 출경 관광업무 영업액  (3) 취득한 경험과 효과.  **제11조** 이 방법을 시행한 후의 3년 내에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는 연도별로 출경관광 업무의 시범 경영효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출경관광업무 시범경영 및 시범여행사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시범여행사가 출경관광 업무를 경영 시 그 경영활동은 《여행사 조례》, 《중국공민의 출국관광 관리방법》 등 법률, 법규 및 규장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여행사 행정관리부문과 기타 유관 행정관리부문은 《여행사 조례》와 《중국공민의 출국관광 관리방법》, 그리고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 및 규장에 따라 시범여행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14조** 시범여행사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광행정관리부문과 기타 유관 행정관리부문은 《여행사 조례》와 《중국공민의 출국관광 관리방법》, 그리고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中外合资经营旅行社试点经营**  **出境旅游业务监管暂行办法**  国家旅游局、商务部令第33号  《中外合资经营旅行社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监管暂行办法》已经国家旅游局、商务部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国家旅游局局长 邵琪伟  商务部部长　陈德铭  二〇一〇年八月二十九日  **第一条** 为了进一步加快旅游业的对外开放，加强国际旅游合作，引进国际先进的旅行社经营模式，促进我国旅行社业的转型升级，提高国际竞争能力，根据《旅行社条例》和国务院《关于加快发展旅游业的意见》，制定本办法。  **第二条** 国家在试点的基础上，逐步对外商投资旅行社开放经营中国内地居民出境旅游业务。  **第三条** 中外合资经营旅行社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应当遵守本办法。  **第四条** 本办法所称的中外合资经营旅行社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是指取得试点资格的中外合资经营旅行社，从事招徕、组织、接待中国内地居民出国旅游和赴香港、澳门特别行政区旅游的经营活动；大陆居民赴台湾地区旅游的除外。  **第五条** 国家严格控制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的中外合资经营旅行社的数量。具体数量由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决定。  **第六条** 中外合资经营旅行社申请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的，应当符合《旅行社条例》第八条规定的条件，并向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符合《旅行社条例》第八条规定条件的相关证明文件。  **第七条** 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的中  外合资经营旅行社，由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在申请人中选择确定，并向申请人颁发《外商投资旅行社业务经营许可审定意见书》。  **第八条** 申请人持《外商投资旅行社业务经营许可审定意见书》以及投资各方签订的合同、章程向商务主管部门提出变更经营范围的申请。商务主管部门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换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通知申请人向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换领《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申请人持换领的《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和《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企业经营范围变更登记。  **第九条** 取得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资格的中外合资经营旅行社（以下简称试点旅行社），应当自换领《旅行社业务经营许可证》之日起3个工作日内，增存质量保证金120万元人民币，并向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提交相关证明文件。  **第十条** 试点旅行社在经营出境旅游业务后三年内，应当每半年向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提交下列经营情况和资料：  （一）组织、接待出境旅游者的组团数量和人次；  （二）出境旅游业务经营额；  （三）取得的经验和效果。  **第十一条** 本办法施行后三年内，国务院旅游行政主管部门应当按年度对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的效果进行评估，并可根据评估结果，对试点经营出境旅游业务及试点旅行社的数量作出调整。  **第十二条** 试点旅行社经营出境旅游业务，其经营活动应当遵守《旅行社条例》、《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等法律、法规和规章。  **第十三条** 旅游行政管理部门和其他有关行政管理部门，按照《旅行社条例》、《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以及国家有关法律、法规和规章对试点旅行社实施监督管理。  **第十四条** 试点旅行社违反本办法规定的，由旅游行政管理部门和其他有关行政管理部门，按照《旅行社条例》、《中国公民出国旅游管理办法》，以及国家有关的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进行处罚。  **第十五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